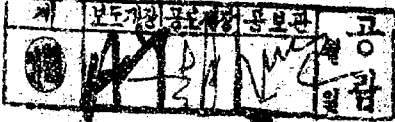


제 1346 호  
1987. 3. 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보  
편집인 : 권 보 관 김 성  
전화 : 731-9111~3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: 735-3337



# 시 보

## 차 례

- ◎ 공문시행
  - 근무시간변경..... 3
- ◎ 규 칙
  - 제 2160 호 : 서울특별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규칙중개정규칙..... 3
  - 제 2161 호 :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용규칙중개정규칙..... 3
- ◎ 고 시
  - 제 117 호 : 사망지정지해제..... 4
  - 제 134 호 : 사료성분등육및변경사항..... 4

(이면계속)

권																			
말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136 호 : 서울특별시 지하철역명일부변경..... 4

㉔ 공 고

제 116 호 :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환경개선및환경영향평가결과지정..... 5

제 123 호 : 불노목별수거지역중제외(비수거)구역..... 5

제 126 호 : 제 2 중전기공사업권허위소..... 6

㉕ 구 공 고

구로구공고제 5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)공람..... 6

㉖ 사 령

㉗ 징집사환

**공 문 시 령**

1.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'87.3.1일부터 '87.10.31일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이 변경되거나 시행에 착수없도록 할 것.

- 현 행 : 09:00 ~ 17:00
- 변 경 : 09:00 ~ 18:00

1987년 3월 1일  
서울특별시장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년 3월 2일  
서울특별시장 영보현 ㉔

**◎서울특별시규칙제 2160호**

서울특별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 3 조 (지급의 범위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서울특별시 (이하 "시"라한다)

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예심급형로 지급한다. 다만, 소가액이 재산되는 사건은 70% 이상의 승소판결사건 포상금을 지급한다. ㉔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소취하 (상불취하 포함)
2. 소송의 결과가 당시와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의 승소판결 제 5 조 (포상금지급액) 중 제 1 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본안소송사건 1건당 60,000원
  - 2. 신청사건 1건당 30,000원

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7년 3월 2일  
서울특별시장 영보현 ㉔

**◎서울특별시규칙제 2161호**

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 6 조제 2 항중 월 "각 10만원"을 월 "각 15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  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17 호

사망지정지해제고시

사망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망지정지를 해제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1987년 3월 2일

서울특별시장

(단위: 개)

구	동	해제지번	해제면적
서대문구	홍제동	산 1-8	16,519

○ 설분등록 내역

(단위: %)

등록번호		사료의 명칭 및 용도	조당배질	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	비고
변경전	변경후		변경전	변경후						
-	13-1046	임신후사료: 임신후~분만전	-	13 이상	2 이상	11 이하	9 이하	0.5 이상	0.4 이상	신규
-	13-1047	육성돈 2호사료: 질병예방용	-	15	3	6	7.5	0.6	0.4	"
1000-18	13-1013	젖먹이돼지사료: 2개월미만	17	18	2.5	3.5	8	0.5	0.4	변경
1000-2	13-1022	젖맹돼지사료: 6~8주	17	18	2.5	3	8	0.5	0.3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6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역명일부변경

서울특별시고시제 475 호( '83.9.13 ) 로 결정고시된 지하철 3호선 역명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4호

사료성분등록및변경사항

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 및 변경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한다.

별첨: 고시내역 1부

1987년 3월 2일

서울특별시장

- 공장명: ㈜비원 배합사료제조공장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29-6
- 대표자: 홍연석

중 일부역명을 철도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한다.

1987년 3월 2일

서울특별시장

○ 변경일자: 1987.5.1. ○ 변경내역			나. 면적: 당초 6,465,681㎡ 변경 6,494,276㎡ 추가면적 28,595㎡			
구분	원행역명	변경역명	* 양쪽대로 전개지가 사업지구내 편입 다. 시행위치: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 이동, 개포동, 영곡동 일부 라. 기 타: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(지적계)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 인에게 보이코 있으며 토지 소유 자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 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는 이 공고로 알음한다. (관제로서 생략)			
지하철 3호선	중앙청역	경복궁역	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16 호 개포역지개발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지침 1. 건설부 고시 제 76 호 ('82.2.18) 의 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원후 건설부 고시 제 224 호 ('86.5. 17) 로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원후 서울특별시 공고 제 686 호 ('86.12.9) 로 개포지구 일부 토지 환지계획 및 환지에정지 변경 공람 공고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 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 차 고 등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 한다. 198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공 고</div>			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23 호 분교특별수거지의 중재외 (비수거) 구역 오물청소업 제 4 조 1 항 및 서울특별 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제 2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 지 역에서 제외 (비수거) 되는 분교 비수 거구역의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 198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			
가. 사업명: 개포토지 구획정리사업			구분	동명	제외구역	비고
			장서	과학동	일부지역	1-5동
			강남	내곡동	"	11동
				백곡동	"	1.2, 4.5, 5.8, 9동
				일현동	"	1.2, 4.5동

**◎서울특별시광고제 126 호**  
**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 취소**  
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취소  
 다  
 1987년 3월 2일  
 서울특별시 장

처분되었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소재지	사 유
618	대성전력	문두경	마포구광원동 367-17	○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2 항 면허기준 미달
659	위안전계전	임기순	마포구서교동 465-19	○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2 항 면허기준 미달

**구 공 고**

**◎구로구공고제 5 호**  
**도시계획사업 (도로) 공람**  
 1. 서울특별시 교사 제 23 호 (74.3.2) 및 동교시 제 341 호 (78.7.8)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, 구로구 교척동 75-55 일대 민영주택 사업 시행지의 진입로 개설허가 신청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별도 개별통지 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

살음한다.  
 1987년 3월 2일  
 구로구청 장  
 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- 문교부 직장주택의 3개조합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공사  
 나. 시행지 및 시행규모  
 ○ 교척동 76 의 200 - 교척동 77 ( B = 15 m, L = 100 m )  
 ○ 교척동 75 의 300 - 교척동 76 의 25 ( B = 10 m, L = 200 m )  
 ○ 교척동 76 의 200 - 교척동 76 의 256 ( B = 8 m, L = 160 m )  
 다. 시행자 : 문교부 직장주택조합의 3개조합  
 라. 시행기간 : 87.4.1 ~ 87.6.30  
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

제 1346 호 사 보 1987. 3. 2 5-7

바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, 설명: 별첨 (생략)  
 사. 공람기간: 87.2.26-87.3.12(15일간)  
 아. 기타사항: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.

**사 령**

◎ 1987 년 2 월 23 일자 령 제 40 호
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고병희 권성수	원예 의하여 그직을 면함	보건환경연구소 장 남 구	지방행정직 7급상당

령 제 41 호

성 명	발령 부 서	직 위 (호봉)	직 급	비고
변종자	보건환경연구소	공백측정기사 (1호봉)	지방행정직 8급상당	신규

령 제 43 호
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정민숙	광주직할시진출을명함.	봉 산 구	지방행정서기

령 제 44 호
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김영미	내무국총무과 파견 (87.2.23-87.8.22)	종 로 구	지방행정서기보

◎ 1987 년 2 월 25 일자 령 제 45 호
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장기찬	지방시설부기감에 임함. 8호봉을 감함. 서울유희피대회조직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(87.2.25-89.12.31)	내 무 국	지방건축기정

㉠ 1987년 2월 25일자 령 제 46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원 부 서	직 급
서 정 호	원예·의약·그림을 변환.	전자 계산 소	지방행정직 8급상당

㉡ 1987년 2월 27일자 령 제 48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원 부 서	직 급
신 현 구	종 로 구	강 남 구	지방행정직 7기
노 용 구	구 로 구	중 로 구	"
이 명 수	별 등 로 구	용 산 구	지방행정직 8기보

㉢ 해외훈련 과정 (인적사항)

소 속	직 급	성 명	연 령	학 려	담당업무	비 고
특동지구개발사업소	지방기계 기사보	김용환	34	대졸	지역난방	
설비공사와						

(훈련내용)

훈련과정	훈련기간	훈련장소	훈련비용
산업부문에너지 절약 및 연료의 연소 기술 훈련	87.2.21-3.22 (31일간)	핀란드 EKONO 사	· 체재비 및 생활비용 핀란드국 부담 · 왕복항공료 소속기관 부담

**정정사항**

시보 제 1345 호 ( 87.2.20 일자 발령 ) 의 서울특별시 조례제 2146 호 (서울특별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) 의 제 2조 2항중 "숙박업소유물 한 콘돔보급 수수료는 100 만원으로

서울특별시  
한다"를 숙박업소유물 통한 콘돔보급 수수료는 100 원으로 한다"로 정정한다.

1987년 3월 2일

서울특별시장